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내
-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나. 지구단위계획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 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지역 또는 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지역 또는 지구로 변경되는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배 이내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 규모 등을 별표 2 내지 별표 17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지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제30

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

2. 도로

3. 주차장

4. 광장

5.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

6. 녹지

7. 공공공지

8. 수도

9. 공동구

10. 학교(대학을 제외한다)

11. 공공청사

12. 문화시설

13. 도서관

14. 연구시설

15. 사회복지시설

16. 공공직업훈련시설

17. 청소년수련시설

18. 하수도

19. 종합의료시설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 바깥

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4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46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20분의 1 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작물의 설치
 - 가.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

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48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5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5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②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60조(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 내지 제59조에 규정된 지구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61조(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① 지역·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 17. 기타 지역 : 2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로 통로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기타 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

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 비율
- ④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운동장 및 공원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65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축사
 2. 퇴비사
 3. 잠실
 4.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5.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6. 관리용건축물(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양어장
- ②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나.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취사용가스판매점, 일반음식점, 다과점, 다방, 이용원, 미

용원, 세탁소, 목욕탕, 사진관, 목공소, 의원, 약국, 점골미술소, 안마미술소, 침구미술소, 조산소, 동물병원, 기원, 당구장, 장의사, 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을 시가화조정구역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제66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

정에 의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 제46조제1항 각호 및 제47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제65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한다.
 -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허가신청서 등)

- ①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68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69조(시행자의 지정)

- ①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 ②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인가·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 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71조(서류의 공람 등)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2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공사완료공고)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비용

제75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2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제7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보조 또는 용자비용)

-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조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②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7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분야별,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 등 계획유형별, 안건별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